<붙임5> 사업주 안내문(안)

’26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사업주 안내용)

○ ’26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6.11.23(월)~11.27(금)**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work24.go.kr 공지란 참고)

- **’26.11.27(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신청결과는 12.11(금) 14:00, 16:00 2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광업 12.14(월)~12.16(수)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2.17(목)~12.21(월)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6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붙임1 '26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6.11.23(월)~11.27(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 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12.9(수)~12.10(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2.11(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광업 12.14(월)~12.16(수)
건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 12.17(목)~12.21(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가점 항목 (9개)** ① 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20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10점), ③ 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3~15점), ④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5점), ⑥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⑦ E-9 근로자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5점), ⑧ 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지정·운영 사업장(5점) ⑨ 인권보호·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 이수 사업장(5점)

□ **감점 항목 (8개)**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20점) ②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5점, 1년간 감점), ⑧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②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③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④ 전산추첨 순

* 가감점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

붙임2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평소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업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주노동자 고용은 의사소통,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국가 간의 신뢰는 물론 때로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주, 관리자와 동료들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는
곧 우리 사회와 기업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줍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감독,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외국인 고용 제한 등 각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장 변경 동의 대가로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방해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주요 인권침해 사례

-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등 집단 괴롭힘 발생
-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 등 중상해 발생
- 이주노동자를 박치기, 뺨 때리기 등 방법으로 폭행
-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여 보관
- 이주노동자에 사업장 변경 동의 대가로 금품 요구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떨어져 머나먼 낯선 땅을 찾아온 우리의 손님이자
소중한 동료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대우 아래 편안하게 일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관리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고용허가제 주요(변경) 사항 안내

기숙사 요건 관련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1. 주요내용

1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숙소 제공 금지(법 제22조의2제1항 개정)

○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건축법」에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의 제공을 금지합니다.**

-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 모두 적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가설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로 등재**되어 있을 것을 규정('26.6.9 외국인고용법 개정→'27.6.10 시행)

⇒ 각 사업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위의 법률 규정 위반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시설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법 제22조의2제2항 개정)

○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또는 변경) 시 주거시설정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 '27.6.10).

3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법 제22조의3 신설)

○ **자치단체**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 '27.6.10).

* 외국인노동자 사용 사업장 현황 자치단체 제공,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 이와 별개로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시설·개보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참조)

2. 시행시기 : 3은 공포 후 6개월('26.12.10.), 1, 2는 공포 후 1년('27.6.10.)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체류지원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업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최대 18백만원까지** 시설 및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개보수비

다만, 이 사업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가 신청은 어렵고(지방정부의 추가예산 편성 종료), '27년에 사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 연락처: ○○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00-000-0000)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고용 허가 신청기간 안내

□ 외국인노동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재고용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는 별도의 절차**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재고용 허가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도개선 안내

1 현장간 이동 사유 사유 폐지 (시행 '26.9.14.)

○ 건설현장의 **외국인노동자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 외국인노동자의 **현장간 이동 제한사유를 완화**하고, 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현장간 이동 사유

(기존) 공사현장 종료 혹은 특정 공정 만료 등 특정 사유에만 제한적 허용
⇨ **(개선) 현장간 이동 제한사유 폐지**

❖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외국인력현황표, 해당 외국인노동자 여권·외국인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공사중단 등 이동사유 입증자료

⇨ **(개선) 신고서, 해당 외국인노동자 여권·외국인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 다만, 이동 예정 현장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고용허가 발급 요건*을 심사하여 현장간 이동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장간 이동 신청한 날의 2개월 전부터 허가일까지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5개월 전부터 허가일까지 임금체불 여부, ▲고용·산재보험, 전용보험 가입 여부 등

2 건설업 고용제한 단위 확대 (시행 '27.3.14)

○ 외국인고용법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의 모든 공사 현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간 이동 요건 완화 시행 시기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안내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목 적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보호 등 효과적인 고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 외국인고용법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대 상

2021.10.14 이후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3·5개월 시점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차기년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점수제 가점(5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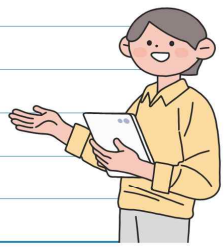
내 용

법령상 교육내용(집체교육, 6H)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온라인 교육 교과목(모바일 앱, E-러닝)

- 고용허가제의 이해
-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 외국인근로자 보건위생 관리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체류관리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교육



미이수 시

「외국인고용법」 개정(2021.10.14)으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고용법 제32조(과태료)

문의처

- **집체교육 | 모바일 앱**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 **E-러닝**
  고용24(고용행정통합포털)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외국인고용 안내 4번)

교육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휴대폰 고용24 어플리케이션

고용24 앱 설치

개인/기업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외국인 고용(사업주/관리) > 사용자 교육 신청 및 수강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온라인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정보 입력 등록 > 학습하기

고용24앱 바로가기



• E-러닝 | www.work24.go.kr

고용24 접속

개인/기업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채용관리) > 사용자 교육 > 온라인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정보 등록 > 학습하기



• 집체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신청 (방문, (전자)우편, 팩스 접수)

지부/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2-6907-7121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033-248-8518
강원동부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033-650-5744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051-330-1835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051-620-1936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055-212-722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052-220-3235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055-791-071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053-580-2395
경북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054-840-3024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054-230-3264
경북서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054-713-3003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031-249-1242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20-8655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031-850-9132

지부/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031-750-6235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안성시	031-615-9050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032-719-0806
광주지역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062-970-1752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063-210-9202
전북서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063-731-5509
전남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061-720-8523
전남서부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061-288-3315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29-0733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042-580-9166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041-620-7622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043-279-9025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043-722-4315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044-410-8018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신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교육 안내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존중받는 일터,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

사업주를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교육



교육시간 2시간 | 교육방식 집체교육 | 참여대상 누구나

1. 추진 배경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인권감수성과 노무관리 역량도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용자 교육과 별도로, 인권보호·노무관리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교육 시간 및 내용

인권 보호
(1시간)인권보호 이해, 인권침해 예방

노무 관리
(1시간)이주노동자 노무관리 실무

본 교육은 외국인고용법 제11조의2에 따른 법정의무(6시간)사용자 교육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주는 상기 2시간 교육과정 이후 이어서 진행되는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교육 대상

법정의무교육(사용자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인사노무담당자, 현장관리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4. 이수 혜택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5점(수료 후 1년간 유효),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가점 5점 ('27년 시행 예정)
※ 이수 혜택은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5. 신청 및 문의

집체교육 신청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대표 문의전화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붙임6>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 사 업 체	사업장명		업 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장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 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

④ 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 무 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 ~ 2m □ 1m ~ 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 화 장 실	① 유 무	□ 있음	□ 없음
	② 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 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 세면 및 목욕시설	① 유 무	□ 있음	□ 없음	
	② 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 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 난방시설	① 유 무	□ 있음	□ 없음
	② 종 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 냉방시설	① 유 무	□ 있음	□ 없음	
	② 종 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 채광 및 환기시설	① 유 무	□ 있음	□ 없음	
	② 종 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사업주) 성　　명 :
생년월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성명(사업장명)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